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, 동항제3호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별표 1 제2호나목 중 “회사로부터”를 “회사(회사와 함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속하는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)로부터”로, “한 보수, 배당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”을 “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적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금액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	
연 락 처	(02) 2100 - 2693